



# A GUIDE TO IN-HOME RELATIVE CHILD CARE

## 자택내 친척 탁아제공에 대한 안내사항

케이스 번호

고객 신분번호

### 어떻게 귀하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탁아제공자를 선택하는가?

귀하는 면허증 소지자나 승인된 탁아소, 가족가정 또는 자택내/친척 탁아제공자를 귀하의 탁아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귀하는 귀하가 원하는 종류의 탁아제공자가 있을 것입니다. 귀하와 귀하의 자녀에게 어떤 종류의 탁아제공자가 가장 좋은지 생각해 보십시오. 여러 종류를 비교해 보십시오. 자녀의 건강, 행복 및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귀하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에 맞는 탁아 제공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십시오.

워싱턴주에는 귀하가 귀하의 필요성에 맞는 면허증 소지자나 승인된 탁아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“탁아제공자 자원 및 의뢰(Child Care Resources and Referral)” 기관들이 있습니다. 귀하 지역 내 “탁아제공자 자원 및 의뢰(Child Care Resources and Referral)”기관이 필요할 경우는 1-800-446-11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### 자택내/친척 탁아제공자를 탁아제공자로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가?

자택내/친척 탁아제공자는 반드시:

- 워킹코넥션스 탁아보조 신청서(Working Connections Chi이 care Application), DSHS 14-417, 2부를 작성해서 서명한 것과 신원조회 승인서(Background Authorization), DSHS 09-653을 주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
- 18세 이상이래야 합니다.
- 워싱턴행정법 170-290-0160에 따라 결격사항이 되는 범죄경력 없어야 합니다.
- 아이의 친부모, 의붓 부모, 입양부모, 법적 보호자, Loco-parentis 또는 이런 사람들의 배우자가 아니래야 합니다.
-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. 보건사회부가 그런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는 안전한 탁아제공자가 될 수 있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아이에게 신체적으로 벌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지시사항을 받아 들이고 준수해야 합니다.
- 미국시민권을 소지하고 있거나 미국에서 합법으로 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정규적으로 제 시간에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안전한 집에서 돌 볼 수 있어야 합니다.
- 기본 건강철차, 예방, 전염병 및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귀하가 알려주어야 합니다.
- 항상 돌보고, 감독하며 아이의 발육에 적절한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.
- 아이의 가정이 아닌 곳에서 탁아가 제공될 경우는 탁아제공자와 같이 살고 있는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미결상태의 혐의나 유죄판결에 대한 정보를 즉시.귀하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- 6명 이상 자녀들의 같은 시간 내의 탁아비를 보건사회부(DSHS)에 청구하지 마십시오.

귀하는 귀하의 수혜자격 기간 동안에 3명까지의 자택내/친척 탁아제공자들의 탁아비만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셋 중 하나만 탁아제공자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 보건사회부(DSHS)가 자택내/친척 탁아제공자에게 시간당 급료는 지불하지만 귀하가 탁아제공자의 고용주입니다. 귀하는 고용주로서 최저임금을 지불하며 사회보장금을 위한 세금을 공제하는 등 합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 상세한 안내사항은 (206) 398-8039로 U.S. Department of Labor, Wage and Hour Division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내 탁아제공자는 어디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가?

#### 칼럼 1

탁아제공자는 아이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는 아이의 자택에서 탁아를 제공해야 합니다:

- 친구 또는 이웃
- 칼럼 2에 게시하지 않은 아이의 친척

#### 칼럼 2

탁아제공자가 다음에 해당될 경우는 탁아제공자의 자택에서 탁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:

- 조부모 또는 증조부모
- 이모, 고모, 외삼촌, 삼촌, 외사촌, 사촌
- 아이의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사는 친척
- 워싱턴주법 74.15에 따른 먼 부족가정 멤버.

### 귀하가 보관해야 할 기록들은 어떤 것인가?

귀하의 탁아제공자는 탁아를 제공한 실제 시간 수를 보여주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. 이런 것은 매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달력에 기록하는 손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. 탁아제공자가 어떤 방법으로 시간 수를 기록하든지 그런 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. 근무시간을 기록해 두지 않을 경우는 탁아비를 초과로 지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연방 및 주 감사관들은 귀하가 받은 탁아보조혜택을 증명하는 근무기록을 검토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--

### 귀하의 탁아제공자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?

귀하의 탁아제공자에게 아동학대나 방치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는 귀하지역 “아동보호 서비스(Child Protective Services(CPS))”에 연락하십시오. 워싱턴주 내 장거리 무료 전화번호는 **1-866-363-4276**입니다. “아동보호 서비스 (CPS)”는 귀하가 지적하는 문제점을 듣고 필요할 경우는 상황을 조사합니다. 귀하가 아직도 귀하의 탁아제공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는 다른 탁아제공자에게 자녀를 탁아 시키도록 하십시오.

**주요:** 주정부 직원에게 아이가 학대 받았거나 방치되었다고 믿을 만한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원은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“아동보호 서비스 (CPS)”나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.